

교수업적평가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교원의 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 실적 평가를 통하여 예술대학의 위상과 일치하는 교수의 업무 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학문발전과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① 교수업적평가 대상은 전체 전임교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겸임교원에게 평가영역별로 부분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

② 교수업적평가는 1년 단위로 매년 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평가할 수 있다.

③ 승진임용 대상 교원의 평가기간은 현직명의 임용기간으로 한다.

④ 재임용(재계약) 대상 교원의 평가기간은 해당 임용기간으로 한다.

제3조(평가범위) 교수업적평가 범위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산학영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교육업적평가 : 강의와 수업참여도 및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
2. 연구업적평가 : 전공과 관련된 모든 연구 및 창작 활동
3. 봉사활동평가 : 교내외 봉사 및 수상 등 봉사활동
4. 산학업적평가 : 취업실적 및 산학협력 활동

제4조(업적심사) ① 전임교원은 교육, 연구 및 봉사부문의 교수업적평가자료와 증빙자료를 매년 12월 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 및 파견기간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의 교육, 봉사 및 산학부문의 업적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③ 산학부문의 업적평가는 전임교원은 일반형으로 평가받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학협력트랙형으로 평가받는다.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일반 전임교원도 산학협력트랙형을 선택하여 산학업적을 평가받을 수 있다.

제 2 장 평가기구 및 절차

제5조(평가위원회 설치) ① 교수업적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2인(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외부인사)과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한다.(단, 위원이 심사대상일 경우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심사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수업적평가자료 확인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 교수업적평가 인정범위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7조(교수업적심사절차) ① 사무처는 전임교원에게 업적평가 실시 1개월 전에 평가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원은 교수업적평가자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사무처에 제출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전임교원들이 제출한 교수업적평가자료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교수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한다.

제8조(교수업적 평가자료 제출) 교수업적평가 자료 제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업적평가 자료<별지1 서식>
2. 연구업적평가 자료<별지2 서식>
3. 봉사업적평가 자료<별지3 서식>
4. 산학업적평가 내역<별지4 서식>
5. 증빙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

제 3 장 교수업적 평가방법

제9조(평가 방법) 평가분야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의 분야로 대별하고, 평가는 각 분야별로 수행하되 분야별 비율을 정하여 종합평가 총점을 산출하며, 분야별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업적 평가) 교육업적의 평가는 별표1의 교육업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책임시수를 초과한 강의시수, 휴·보강 유무, 강의계획표 입력 및 제출, 담당교과목 수, 성적입력, 야간 및 비정규교육과정 강의, 강의평가, 학생상담, 취업지도, 임상지도 등을 평가한다.

제11조(연구업적 평가) ① 연구업적의 평가는 별표2와 별표2-1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논문,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연구비수혜, 학술저서, 저서 및 번역서, 창작, 작곡발표회, 연주회, 공연, 수상, 음반, 평론 등을 평가한다.

② 공동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률은 단독연구실적물은 100%, 2인의 경우 70%, 3인의 경우 50%, 4인 이상의 경우 30%로 한다.

제12조(봉사업적 평가) 봉사업적의 평가는 별표3의 봉사업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교내보직, 학생특별지도, 학교행사, 입학활동, 학회활동, 자문 및 강연활동, 사회봉사활동, 국제교류활동, 수상 등을 평가한다.

제12조의2(산학업적 평가) ① 산학업적의 평가는 별표4, 혹은 별표4-1의 산학업적 평가기준에 의

하여 취업활동, 산학협력활동, 산학교육활동, 연구비수혜 등을 평가한다.

② 산학업적 기준점수 부족 시 교육부문 및 봉사부문에서 기준점수를 초과한 경우 각 30점 까지 산학업적에 반영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12조의3(업적의 인정) ① 교수업적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적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시 업적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경우 인정여부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연구년, 질병으로 인한 휴직, 파견, 출산휴가자 교수업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1. 6개월 미만 휴직 및 파견자는 근무 한 6개월 기간의 업적을 2배로 인정하여 연 평가 점수에 반영

2. 1년 휴직 및 파견자는 직전연도 연간 업적을 해당 기간 업적으로 인정하여 반영

제13조(평가기준) 각 영역별 교수업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1의 평점에 따른다.

2. 연구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2-1의 평점에 따른다.

3. 봉사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3의 평점에 따른다.

4. 산학업적의 평가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4-1의 평점에 따른다.

제13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 ① 교수업적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교수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교원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사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심사의 자료로 활용한다.

②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교내연구비 배정, 우수교원 및 우수학과선정, 연수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5조(비밀유지) 평가의 결과는 우리대학이 정한 활용 목적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특별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산학협력 실적, 제5조 위원의 임기 2년, 제12조의 제3항 신설, 제13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 신설, 별표1, 별표 2, 별표 2-1)

<별표 1>

1. 교육업적평가 기준

분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 점 산 정 기 준		평점 상한
강 					

<교육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

1) 강의담당시수

① 연간 책임시수가 18인 교수가 1학기에 10시간, 2학기에 8시간을 강의했을 경우, 조정된 강의시수의 연간합계가 18이므로 $70 + [(18 - 18) \times 10] = 70$ 점이 되며, 최대 120점까지 인정한다.

② 대단위 강좌에 대해서는 평점을 더해준다(시수 당 0.5점 ~ 1.5점을 더함).

수강인원 : 60명 ~ 100명 = 0.5점

101명 ~ 160명 = 1.0점

161명 이상 = 1.5점

2) 강의일수 : 강의일수는 주당 강의일수를 의미한다.

3) 휴강 및 보강 : 무단휴강(긴급 상황 제외) 또는 보강 미실시는 사전 공고 없이 휴강을 하거나 사전 공고가 있었더라도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4) 강의계획서 입력 및 제출 : 교학처에서 지정한 강의계획서 입력 마감일 이전에 입력된 것만 인정한다.

5) 담당교과목수

① 평가 대상 기간 중 담당한 교과목 수를 말한다.

② 한 학기 중의 동일 교과목은 1과목으로 인정한다.

6) 성적입력은 학적과가 지정한 입력 마감일 이전까지 입력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7) 정기적으로 편성된 우리대학의 야간 강의나 우리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강의를 의미한다.

8) 우리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이버강의를 의미한다.

9) 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학기별 계산하여 합산한다.

② 수강인원이 10명 이하는 반영하지 않는다.

10) 학생상담 실적 : 학생 개인별 상담일지에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

11) 전공스터디그룹 지도교수 :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공스터디그룹 지도교수 활동에 한하여 인정한다.

12) 입상지도 : 학생을 지도하여 콩쿨이나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입상에 기여한 지도교수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산학업적평가 등 타 영역 업적과 중복 인정은 불가하다.

<별표 2>

2. 연구업적평가 기준

분 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 점
논 문 및 학술활동	논문	국제저명·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400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	3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	200
		국내일반학술지 게재 논문	100
		박사학위논문	150
		석사학위논문	100
		대학 논문집	100
	학술발표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00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80
		기타학술대회 발표논문	60
	위탁 연구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보고서, 교내연구보고서	150
	학술수상	국제학술상	200
		국내학술상	100
저 서 및 창 작	학술저서	국제전문학술저서	300
		국내전문학술저서	200
	저서 및 역서	대학 전공 교재	150
		검인정 교과용 도서	120
		번역서	100
		편저	70
		저서개정판	50
		창작	50

※ 위 평점은 단독(1인)을 기준으로 한 평점임.

<연구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

* 모든 연구실적물은 우리대학 소속이 명시되어야 인정한다. 단, 소속 명시가 불가피한 경우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1) 국제저명·전문학술지 : 국외의 저명 학술단체나 전문학술지에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논문 게재 당시에 SCI, 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 논문을 말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평가된 학술지를 말한다.
- 3) 국내일반학술지 :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로서 논문 게재시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치는 학술지를 말한다.
- 4)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은 평가 인정기간 동안 취득한 학위논문을 말한다.
- 5) 대학논문집 : 대학 또는 그 부설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를 말한다.
- 6)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문학술기관이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의미한다.
- 7)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 전국규모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의미한다.
- 8) 기타학술대회 발표논문 : 8), 9)항에 해당되지 않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의미한다.
- 9) 연구보고서 :
 - ①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학술연구결과의 보고서로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와 자료집을 말한다.
 - ② 국고사업수행연구 및 정책과제연구 지원, 교내 연구사업에 의한 연구보고서와 자료집을 의미한다.
- 10) 국제학술상 수상 :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적에 대하여 국제전문학술지 발행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것을 의미한다.
- 11) 국내학술상 수상 :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적에 대하여 국내 학술지 발행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것을 의미한다. 전국규모학회에서 받은 상은 국내학술상으로 인정한다.
- 12) 국제학술저서 : 국외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되는 학술저서를 말한다.
- 13) 국내학술저서 : 국내에서 출판된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여도가 인정되는 학술저서로써 ISBN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14) 대학전공교재 : 대학의 강의를 위한 전문분야 서적으로 ISBN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15) 검인정 교과용 도서 : 전공분야 관련 초중등 교과용 도서로서 교과부로부터 국·검·인정된 도서를 말한다.
- 16) 번역서 : 전공분야의 학술서적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서적을 번역한 서적을 말한다.
- 17) 편저 : 전공분야의 논문 및 이론, 또는 문예 창작집 등을 묶어서 출간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서적으로서 저자 설명이 포함된 서적을 말한다.
- 18) 저서개정판 : 출판된 저서의 내용을 1/3이상 개정하여 출판한 사실이 인정된 개정판을 말한다.
- 19) 창작 : 시집, 소설, 희곡집, 평론집, 시나리오, 동화집에 수록된 작품전체가 신작인 창작을 말한다.

※ 공동연구실적에 대한 인정률은 단독연구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임.

<별표 2-1>

음악 및 공연 관련 부문 평가 기준

대항목	소항목	평점	비 고
음 악	개인 단독 연주, 지휘(관현악단, 뮤지컬, 합창단)	100	
	종합 공연 참여	1곡 당 10점	50점 이하
	코러스, 세션 반주의 일원으로 참여	1곡 당 5점	30점 이하
음 반	1인 작곡 작품 및 연주 음반 출간	120	10곡 이상
	공동 음반 출간	1곡 당 15점	60점 이하
	편곡, 음반 프로듀싱 및 엔지니어링	80	전체 50분 이상인 경우, 50분 미만은 1/2인정, 20분 미만은 1/4인정
공연 및 영상	연출(연극, 뮤지컬, 오페라, 영화, TV, 무용 등)	120	공연(상영)된 것에 한함. 전체 50분 이상인 경우, 50분 미만은 1/2인정
	주연급 출연(연극, 뮤지컬, 오페라, 영화, TV, 무용 등)	100	전체 50분 이상인 경우, 50분 미만은 1/2인정
	조연급 출연(연극, 뮤지컬, 오페라, 영화, TV, 무용 등)	60	”
	단역급 출연(연극, 뮤지컬, 오페라, 영화, TV, 무용 등)	40	”
	극본, 대본, 시나리오(장편/단편)	100/60	
공 연 기 획 제 작	공연 기획, 제작, 연출	80	전체 1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미만은 1/2인정, 20분 미만은 1/4인정
	예술감독, 조명, 영상 및 무대 감독	80	
수 상	공인된 국제 음악상, 연극, 영화제 수상	120	
	공인된 국내 음악상, 연극, 영화제 수상	60	
평 론	국외 저명 전문지 평론 게재	100	연간 5회 인정
	국내 저명 전문지 평론 게재	50	

<음악 및 공연 관련 부문 평점 산정기준>

- 1) 음악, 실용음악, 뮤지컬의 각종 공연은 공연 장소에 따라 다음의 평점 인정 비율에 따른다.
 - ① 국내 광역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도시에서 A급의 공인된 공연장 : 100%
 - ② 기타 중소 도시에서 A급의 공인된 공연장 : 70%
 - ③ 국내 광역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도시에서 A급이 아닌 공연장 : 70%
- 2) 동일한 연주회에서 중복 배점을 불인정한다. 즉, 협연, 작곡, 지휘, 연출 중 택일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또한, 개인발표회, 독주회, 독창회 및 지휘가 아닌 경우는 연간 5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3) 동일한 내용 및 작품으로 발표, 공연, 연주하는 경우는 중복 인정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4) 순회 공연의 경우는 1건만 인정하며, 기념행사, 초청공연 등으로 발표된 것은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5) 음악 관련 공연 주체가 1명인 단독 공연이거나, 주체가 되는 밴드 리더일 경우에는 100% 인정하며, 구성원이 7명 이하일 경우 50%, 8명 이상일 경우에는 20%를 인정한다.
- 6) 음반은 공인된 제작사에 의한 제작물에 한하여 인정한다.
- 7) 모든 연구 실적은 프로그램 원본 및 관계 자료(팸플렛, 녹화물 등)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3>

3. 봉사업적평가 기준

분 야	대 항 목	소 항 목	평가기준	평 점
교내 봉사	보직 활동	처장	평 점 × 근무월수	12
		부설기관장		9
		학과장, 전공주임		6
	학생특별지도	학생단체(동아리) 지도	6개월 이상	30
	학교 행사	특강 및 학교행사, 학과행사 참여	1일 × 5점	최대 60
		교내 예배 참석	참여 건 × 2점	최대 50
	학교기여도	대학발전사업 및 대외사업 계획서 작성·발표, 사업 참여	참여 건 × 20점	최대 60
	입학 활동	입학감독 및 진행위원	참여 건 × 10점	최대 60
		입학 홍보 활동		
교외 봉사	학회 활동	국제 또는 국내학회 임원	6개월 이상	20
		국내외 학술회의 위원		
	사회교육 활동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자문활동	3개월 이상	20
		국내외 학술회의 사회자, 토론자	참여 건 × 20점	최대 60
		국내외 학술대회, 학회세미나 및 연 수 참석		
	사회봉사활동	고시출제, 논문심사, 채용평가채점	참여 건 × 20점	최대 60
		교양서 저술 및 정기간행물 기고		
		언론매체기고 및 출연		
		사회복지기관 봉사		
	교회 봉사	교회 봉사	6개월 이상	60
		국제교류활동	대학국제교류행사 참여	참여 건 × 20점 최대 80
수상	포상 및 표창	국가기관, 지자체, 백산학원 표창	참여 건 × 20점	최대 40

<봉사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

- 1) 보직활동의 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 2) 학생특별지도 : 학교에 등록된 학생단체 지도교수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6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에 연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3) 학교 행사
 - ① 특강 및 학교행사, 학과행사 참여 : 우리대학에서 실시하는 특강 및 입학식, 졸업식, 학과오리엔테이션 및 MT, 신입생대학생활안내, 신입생환영회, 체육대회, 졸업연주회, 추계 정기연주회, 수학여행, 축제 등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② 교내예배참석 : 개강예배, 부활절예배, 추수감사예배, 기독교의 이해 수업에 참석한 경우 인정한다.
- 4) 학교기여도 : 우리대학 발전사업 및 대외사업계획서의 작성·발표에 기여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 5) 입학활동
 - ① 입학감독 및 진행위원 : 우리대학 입학전형기간 중 입시감독 및 진행위원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② 입학홍보 활동 : 입학홍보를 위한 고교방문 활동 또는 학원방문, 교내 외의 입시설명회에서 특강을 한 경우에 한한다.
- 6) 학회활동
 - ① 국제 또는 국내학회 임원 : 회장·부회장·이사·감사·국장 등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국내외 학술회의 위원 : 편집위원·학술위원·평 위원을 말하고, 동일단체의 임원 및 위원의 중복은 상위 직만 인정한다. 단, 지부학회인 경우 지회장만 위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학술단체에 준하는 단체의 임원 및 위원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7) 자문 및 강연 활동
 - 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활동은 3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에 인정한다.
 - ② 국내외 학술회의 사회자, 토론자 : 국내외에서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최하는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사회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 ③ 학교의 승인에 의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학회세미나 및 연수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8) 사회봉사활동
 - ①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고시 출제, 논문 등의 심사(심의), 평가채점 등의 위원활동으로 동일한 기관, 동일날짜의 활동은 1건으로 인정한다.
 - ② 연구업적에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체의 저술을 의미한다.
 - ③ 중앙, 지역의 일간신문, 중앙잡지의 논평, 서평, 칼럼 등을 기고하거나 방송매체에 사회자, 토론자, 출연자 등으로 출연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④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기관장이 발행한 것으로 최소24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동일한 기관, 동일날짜 봉사실적은 1건으로 인정한다.
 - ⑤ 기독교회에서 전공분야의 지휘나 반주, 편곡 등으로 봉사한 것을 인정한다.
- 9) 국제교류활동 : 우리대학 국제교류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10) 포상 및 표창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백산학원(이사장, 총장) 표창을 의미한다.

<별표 4>

4. 일반형 산학업적평가 기준

분야	대항목	소항목	현행	평점 상한
취업지도	취업활동	취업지도 실적	추천 1명당 5점, 채용 1명당 20점	100
			산업체 방문 × 10점	100
산학협력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체결	업체수 × 30점	60
		기술지도, 자문, 강의	건당 × 20점	60
	산업인력양성	현장실습, 인턴십 지도	현장실습업체 당 × 20점 인턴십 지도학생 당 × 10점	100
	교육활동	산학협력 교육	건당 × 20점	60
	연구비	연구비수혜	외부연구비 수탁	연간200

<일반형 산학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

- 취업지도 실적(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1년 이내자)
 - 추천실적 : 추천 1인당 5점을 인정하나, 동일기업, 동일기간에 추천한 경우는 1건으로 인정한다.
[제출증빙자료 : 추천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채용실적 : 추천과 동시에 채용이 된 경우 별도로 추천점수 인정하지 않고 채용점수 20점을 인정한다. [제출증빙자료 : 취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산업체 방문실적 : 취업진로를 위한 산업체 방문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하며, 산업체 방문계획서 및 산업체 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활동
 - 산학협력체결 : 학과 관련 사업체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산학협력실적이 있어야 한다.
 - 기술지도, 자문, 강의 : 산업체에 방문하여 애로기술지도, 자문, 강의의 활동한 경우를 의미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날짜 활동은 1건으로 인정한다.)
- 산업 인력양성 : 현장실습 및 인턴십 파견업체로 실습학생 현장지도 방문 활동을 의미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체별로 진행되는 학생지도에 대하여 파견업체 발굴에 따른 점수와 업체별로 파견된 학생인원 지도에 대한 점수를 각각 인정한다.
- 교육활동 : 산학협력 교육은 전문계고 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강의한 경우를 말한다.
- 연구비 수혜
 -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탁한 것을 의미하며, 계약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년간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이를 매년 인정한다.
 - 인문·사회계열은 100만원 당 5점, 예·체능계열은 100만원 당 10점을 부여한다.

<별표 4-1>

5. 산학협력트랙형 산학업적평가 기준

분야	대항목	소항목	현행	평점 상한
취업지도	취업활동	취업지도 실적	추천 1명당 5점, 채용 1명당 20점	200
			산업체 방문 × 10점	100
산학협력	산학협력활동	산학협력체결	신규 업체수 × 30점	60
		자문, 강의	건당 × 20점	60
		애로기술지도	애로기술지도 건당 × 20점	100
		산학협력협의회	학과별 산학협력협의회 개최 건당 × 30점	60
	산업인력 양성	현장실습, 인턴십 지도	현장실습업체 당 × 20점 인턴십 지도학생 당 × 10점	200
	교육활동	산학협력 교육	건당 × 20점	60
	연구활동	산업체 공동 연구결과 물	건당 × 50점	100
	연구비	산업체 연구비수혜	백만원당 × 20점	500
	특허	특허출원 및 등록	해외 출원 건당 500점 국내 출원 건당 100점	500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 건수	100만원당 50점	100

<산학협력트랙형 산학업적평가 부문 평점 산정기준>

- 1) 취업지도 실적(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1년 이내자)
 - ① 추천실적 : 추천 1인당 5점을 인정하나, 동일기업, 동일기간에 추천한 경우는 1건으로 인정한다.
[제출증빙자료 : 추천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채용실적 : 추천과 동시에 채용이 된 경우 별도로 추천점수 인정하지 않고 채용점수 20점을 인정한다. [제출증빙자료 : 취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② 산업체 방문실적 : 취업진로를 위한 산업체 방문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하며, 산업체 방문계획서 및 산업체 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산학협력활동
 - ① 산학협력체결 : 학과 관련 사업체와 신규로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산학협력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② 자문, 강의 : 산업체에 방문하여 자문, 강의의 활동한 경우를 의미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날짜 활동은 1건으로 인정한다.)
 - ③ 애로기술지도 : 산업체에 방문하여 애로기술지도로 활동한 경우를 의미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날짜 활동은 1건으로 인정한다.)
 - ④ 산학협력협의회 : 학과별 산학협력협의회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참여건당 점수를 인정한다.
- 3) 산업 인력양성 : 현장실습 및 인턴십 파견업체로 실습학생 현장지도 방문 활동을 의미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체별로 진행되는 학생지도에 대하여 파견업체 발굴에 따른 점수와 업체별로 파견된 학생인원 지도에 대한 점수를 각각 인정한다.
- 4) 교육활동 : 산학협력 교육은 전문계고 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강의한 경우를 말한다.
- 5) 연구활동 : 산학협력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결과물(연구보고서 제외)을 말하며 건당 점수를 인정한다.
- 6) 연구비 수혜 :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탁한 것을 의미하며, 계약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되, 100만원 당 20점을 인정한다.
- 7) 특허 : 특허출원 및 등록을 의미하며 해외와 국내 출원 건당 점수를 인정한다. 단, 연구업적 점수와 이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8) 기술이전 : 기술이전 계약 건수를 의미하며, 계약 건수당 점수를 인정한다.

2025 학년도

교수업적평가표 보고서

(재임용 · 재계약용)

소속 : 학과

직명 :

성명 : (인)

국 제 예 술 대 학 교

<별지 1 서식>

교육업적내역서

1. 강의실적

학 기	담당교과목명	담당시수	강의요일	휴강	강의계획서
1	무대음악적임	2	화	없음	
	전공실기1	6.4	목	없음	
2	연주와비평2	2	월	없음	
	음악감상및비평2	4	화	없음	
	졸업공연제작시연	4	금	없음	
평점산정 기준	연간담당교과목수×20 점	70점 + [(연간강의담당 시수 - 연간책임시수) × 10점]	30점 + [(학기당 강의 일수 - 3일) × 10점] 의 1, 2학기 합산	40점 - (휴강, 보강 미 실시 시수 × 10점)	50점 - [미입력(제출) 과목수 × 10점]
평 점 (피평가자)	100	74	1학기 20 2학기 30	40	50
평 점 (평가자)					

(예시의 파란 글씨는 지우고 제출하세요.)

학 기	성적입력	야간 및 비정규 교과목명	사이버 강의	강의평가 (미입력)	강의평가감점 (미입력)	비고
1						
2						
평점산정 기준	30점 - (미입력 과목수 × 10점)	담당교과목수×10 점	담당교과목수×20 점			
평 점 (피평가자)	30	0	0			
평 점 (평가자)						

2. 학생지도실적

학 기	상담학생수	전공스터디그룹명	입상지도학생수	비고
1	20명		2명	
2	20명			
평점산정 기준	상담 학생수 × 3점 (학생 개인별 상담일지 제출)	전공 스터디그룹 지도 교수	지도학생수 × 5점	
평 점 (피평가자)	60		10	
평 점 (평가자)				

<별지 2 서식>

연구업적내역서

번호	년월일	연구업적 대항목	연구업적 소항목	연구업적명	공동 연구인 수	평점 (피평가자)	평점 (평가자)	비고
1		음반	음반 프로듀싱	Orquesta Ventana (전체 30분)		40		
2		공연기획	공연 연출		2	49		
3								

<별지 3 서식>

봉사업적내역서

번호	봉사활동 대항목	봉사활동 소항목	봉사활동명	참여건수 혹은 개월	평 점 (피평가자)	평 점 (평가자)	비고
1	보직 활동	학과장		12개월	72		
2	학교 행사	학과행사 참여	M.T.	2일	10		
3	입학 활동	입학 홍보 활동	학원 방문	5건	50		
4	자문 활동	공공기관 자문활동	서울시 문화사업단 고문	3개월	20		

<별지 4 서식>

산학업적내역서

번호	산학업적 대항목	산학업적 소항목	산학업적명	참여건수 혹은 명수	평점 (피평가자)	평점 (평가자)	비고
1	취업활동	취업지도 실적	○○업체 추천	5명	25		
2	취업활동	취업지도 실적	○○업체 채용	3명	60		
3	산학협력활동	산업체 자문	○○업체 자문	1건	20		

업체 취업 추천은 추천결과보고서를, 채용 실적은 취업증명서 등을 제출
산학협력 결과보고서 제출